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| | |
|---|------|
| 선 | 기관외장 |
| 람 | |

제1455호 2019. 7. 31(수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입법예고 ----- 1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- 1278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7. 31 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구청장과 일선부서 및 구민과의 원활한 가교역할과 소통강화를 도모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비서실 별정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일부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**【별표 2】**
 - 별정직공무원
 - 5급상당 이상 : 25% ⇒ 0%

- 7급상당 : 25% ⇒ 34%이내
- 8급상당 : 25% ⇒ 33%이내
- 9급상당 : 25% ⇒ 33%이상

○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【별표 3】

- 일반직 계 : 1,159명 ⇒ 1,160명(증 1명)
 - 5급 : 68명 ⇒ 69명(본청 38명 ⇒ 39명)
- 별정직 계 : 4명 ⇒ 3명(감 1명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 : 기획예산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560-4042, 팩스 560-2703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- 구청장과 일선부서 및 구민과의 원활한 가교역할과 소통강화를 도모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별정직 비서실 인력을 일반직으로 일부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【별표 2】

- 별정직공무원
 - 5급상당 이상 : 25% ⇒ 0%
 - 7급상당 : 25% ⇒ 34%이내
 - 8급상당 : 25% ⇒ 33%이내
 - 9급상당 : 25% ⇒ 33%이상

○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【별표 3】

- 일반직 계 : 1,159명 ⇒ 1,160명(증 1명)
 - 5급 : 68명 ⇒ 69명(본청 38명 ⇒ 39명)
- 별정직 계 : 4명 ⇒ 3명(감 1명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 정 안 : “해당 없음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해당 없음”

다. 예산수반사항 : “해당 없음”
라. 관계 법령 발취 : “해당 없음”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2와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| 구 분 | 4급 이상 | 5급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비 율 | 1% 이내 | 7% 이내 | 24.5% 이내 | 33.5% 이내 | 29% 이내 | 5% 이상 |

비 고 :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2. 연구직공무원

| 구 분 | 연구직 | |
|-----|------|-------|
| | 연구관 | 연구사 |
| 비 율 | 3%이내 | 97%이상 |

3. 별정직공무원

| 구 분 | 5급상당 이상 | 6급 상당 | 7급 상당 | 8급 상당 | 9급 상당 |
|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비 율 | - | - | 34% 이내 | 33% 이내 | 33% 이상 |

비 고

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| 기관별 직급별 | 총 계 | 본 청 | 의회사무 기 구 | 직속기관 | 출장소 | 동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|
| 총 계 | 1,165 | - | | | | |
| 정무직 계 | <u>1</u> | - | | | | |
| 구청장 | 1 | 1 | | | | |
| 일반직 계 | <u>1,160</u> | - | | | | |
| 2급 | 1 | 1 | | | | |
| 4급 | 7 | 5 | 1 | 1 | | |
| 5급 | <u>69</u> | <u>39</u> | 2 | 6 | 1 | 21 |
| 6급 이하 계 | 1,083 | - | | | | |
| 연구직 계 | <u>1</u> | - | | | | |
| 연구사 | 1 | - | | | | |
| 별정직 계 | <u>3</u> | - | | | | |
| 6급 상당 이하 계 | 3 | - | | | | |

의 건 수 렴 서

| 검 토 구 분 | | 유 | 무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-----|
| 검토사항 | 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.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 여부 6. 기타 문제점 | | |
| 실·국(군·구)별 의견 | | | |
| 협약개요 | 실·국별 | 제 출 의 건 | 검 토 내 용 |
| | | | |

